

의안번호	2201321
의 퇴 인	진선미의원
회 답 일	2024.07.04.
추 계 번호	24D055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5조의3 (교통사고 통계 의 작성·관리) 신설	경찰청장은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하고,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,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, 승차구매시설(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)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5조의3 (교통사고 통계 의 작성·관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교통사고 통계작성 항목 확대(안 제145조의3)

- 개정안은 승차구매시설을 포함하여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국 경찰관서의 정보시스템 변경, 교통조사관 업무 범위 확대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경찰청 등 교통행정기관의 교통사고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「교통안전법」 1)에 규정되어 있고, 교통사고 통계 세부항목²⁾은 교통사고처리조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 규칙에는 승차구매시설에서의 사고에 관한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
- 다만, 승차구매시설 교통사고 통계 작성 및 관리를 위한 교통조사관 인력 재배치 또는 증원 여부, 교통사고 통계 작성 및 관리 정보시스템의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－ 참고로, 전국의 경찰관서에서는 신고·접수된 교통사고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3년에 ‘교통사고 기록 및 통계관리시스템’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시스템과 통합·연계하며 고도화하고 있음

1) 「교통안전법」

제49조(교통사고의 조사 등) 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교통사고를 조사·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교통행정기관, 위원회 또는 관계공무원 등은 법령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·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50조(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원인조사) ①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, 교통시설설치·관리자를 지도·감독하는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시설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교통시설의 결함, 교통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등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②~④ (생략)

제51조(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·관리) ①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사고 또는 그 원인을 조사·처리한 교통행정기관 등은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·통계 또는 정보(이하 "교통사고관련자료등"이라 한다)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·관리하여야 한다.

2)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원표 항목(60개)

- － 교통사고 개요(13), 교통사고 당사자 현황(17), 교통사고 차량 현황(7), 교통사고 도로환경(14), 기타 피해자별 현황(9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